

## 2019년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

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2월 6일  
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장

### 1. 최종합격자 명단

#### 최종합격자

연 번	응시번호	성 명	비 고
1	19-003	김 ○ 순	'20.1월 임용예정

### 2.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

#### 채용후보자 등록

- 등록대상: 최종합격자
- 등록기간: 2019.12.06.(금) ~ 2019.12.12.(목) 18:00까지
- 등록방법: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으로 서류 제출(방문 제출)\*

\*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서명 날인 및 확인을 위한 방문 필요

### 3. 제출서류 안내

- 이력서 1부(별지 제1호 서식)
  - ※ 사진(최근 3개월 이내, 모자 벗은 상반신 반명함판 3×4cm) 부착
- 신원진술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2부(별지 제2호 서식)
  - ※ 동일한 원판의 인화된 사진(3×4cm) 각각 부착
  - ※ 사진(모자 벗은 상반신 반명함판) 2장 별도 제출
- 채용신체검사서 1부(별지 제3호 서식)
  - ※ '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'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발급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/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검사서
- 신분증 사본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, 주민등록초본 1부(병역사항 포함/해당자)
-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(상세) 각 2부(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된 것)
-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
- 병적증명서 2부(해당자)

### 4. 유의사항

-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신원조회, 결격사유 조회, 채용신체검사 등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- ※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,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지정된 기한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**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**
-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포기서(별지 제4호 서식)를 작성하여 역사기록관 운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
  - 신원진술서의 '학력'란은 초등학교부터 최종학력까지 기재
  - 모든 별지 서식의 자필서명은 본인 한글성명을 정자로 기재
  - 모든 제출서류는 단면으로 출력하여 제출
  - 제출서류는 정리 후 반드시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
  - ※ 양면인쇄, 2쪽 모아찍기 금지, 스테이플러 사용금지

## 5. 기타 문의사항

○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b>임용절차 관련</b>	역사기록관 운영지원팀 인사·채용담당자 (전화 051-550-8010)
<b>업무분야 직무관련</b> (근무형태, 근무시간, 보수 등)	역사기록관 운영지원팀 공무원 업무담당자 (전화 051-550-8032)

[별지 제1호 서식]

**이 력 서**

사진  (3 x 4cm)	성	한 글		생년월일	. . .	
	명	한 자		주민등록번호		
	주소					
	전화번호	자택) HP)			E-mail	
학 력	기간(연,월까지 기재)	학 교 명(고교이상)		전 공(학위)		
	~					
	~					
경 력	기간 (연,월,일까지 기재)	근 무 처	직 위(급)	업 무 내 용		
	~					
	~					
자 격 및 면 허	취득년월일	자 격 · 면 허 명		시 행 처		
	. . .					
	. . .					
	. . .					
병 역	복 무 기 간	군 별	계 급	병 과	미필 또는 면제사유	
	~					
신 장	cm	체 중	kg	취 미	특 기	
종 교						
가 족 사 항	관 계	성 명	연 령	학 력	직 업	
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. . . . 년 월 일 성 명 : (서명)						

## 신 원 진 술 서(약식)

성 명		한 자		주민등록번호		[사진] (3cm×4cm) · (3.5cm×4.5cm)
등록기준지						
주소						
실거주지						
직 장	직장명 : 소재지 :			연락처	직장전화 : 휴대폰 : E-mail :	
학 력	학 교 명	기 간	전 공 학 과	학 위	소 재 지	
		. . ~ . .				
		. . ~ . .				
		. . ~ . .				
		. . ~ . .				
경 력	기관·업체 및 정당·사회단체명	기 간	직 책(직급)	상 별 관 계(일자)		
		. . ~ . .				
		. . ~ . .				
		. . ~ . .				
해 외 거 주 사 실	거주 국가	기 간	거주 목적	동반 가족		
		. . ~ . .				
		. . ~ . .				
병 역	군 별	기 간	병 과	최종 계급	미 필 사유	
		. . ~ . .				
배우자 부모 자녀	관 계	성 명	생년월일	관 계	성 명	생년월일
	배우자			子		
	父			子		
	母			子		
1.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「국가공무원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 2.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						
작 성 자      성명			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 인(서명 또는 날인)			



## 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 분	② 시험실시 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 명 (한 자) ( )	사 진 (3cm × 4cm)  ※ 압인 또는 계인
⑥ 검사 시					
⑦ 재 사 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

### 검 사 내 용

키	cm	체 중	kg
가슴둘레	cm	혈 압	
(교정)시력	좌: ( )	색 신 (색 각)	(교정)청력
	우: ( )		좌: ( ) 우: ( )
안 질 환		이비인후질환	
치 아		호 흡 기 질 환	
간 질 환		신 경 질 환	
소 화 기 질 환		피 부 질 환	
순 환 기 질 환		정 신 질 환	
비 뇨 기 질 환		혈청검사(매독)	
흉부X선 검사		기 타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 (인)

검사 결과 합격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합 격 <input type="checkbox"/> 불 합 격 <input type="checkbox"/> 판 정 보 류	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	
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의료기관의 장 (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
------	----------

##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### [응시자]

1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 -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  
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 -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  
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 -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2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
### [의료기관]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) 또는 계인(契印)을 해야 합니다.
2. “검사 내용” 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 -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“정상”, “양호”, “이상 없음” 등으로 적어야 함
    - 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“합격” 또는 “불합격” 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
3. “검사 결과 합격 여부” 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“√”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  -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   - ‘만성골수성백혈병’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
    - ‘매독(syphilis)’ 양성으로 나타나나,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
    - ‘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’ 에 해당하지 않음
  - 나.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
    -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.1, 오른쪽 0.1
    -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(microliter)당 6만개 이하인 ‘혈소판 감소 자색반’ 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
  - ※ 판정 보류 사유: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
4.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

